

서산A.B지구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 건의안

의안 번호	192
----------	-----

제안년월일 : 1998. 4. 1

제안자 : 김관기 의원의 13인

1. 주 문

- 현대의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어장잠식으로 피해를 입은 C급 분류 보상대상 어민들에 대한 무허가.무신고 어업 보상 문제가 아직까지 미해결 상태에 있으며,
- 사업완료후 매립지의 일부를 매수할 희망하는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매각하기로한 조건을 현대에서 이행하지 않고 있어,
- 피해어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관리를 위해 A.B지구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과 매립지의 분배가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2. 제안이유

- '91년 6월 20일 농림부에서 현대의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면허 연장허가시 무허가.무신고 어업에 대해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례법을 준용하여 피해 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해줄것과 사업완료후 매립지의 일부를 매수할 희망하는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해야 한다는 조건으로 연장허가 하였으며,

- 충청남도에서는 이에 근거하여 현대와 협의하여 보상지침을 수립시달하였고, 현대에서도 공공용지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하여 보상한다는 계획을 공고하고도 보상대상 및 보상금 지급액을 A.B.C급으로 차등분류하고 또한 이에 반발하는 C급 보상대상 어민들에게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이의 결과에 따라 보상하러 하고 있으며,
- 매립지의 분배도 언장히가시 조건의 위험 및 절반이상의 매수 희망신청대상 농어민들이 직접 피해농어민이 아니라는 이유를 들어 매각을 기피하고 있어,
- 국내 최고의 대기업으로서의 도리를 다하여 어민들이 더이상 시간적,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당초 계획대로 조속한 시일내 공공용지 취득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 규정에 의해 피해어민들에 대한 보상을 완료하고, 부의 재분배와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하여 성실한 자세로 매립지를 매수를 희망하는 농어민에게 분배할 수 있도록 건의하고자 함.

3. 건의처

- 농림부장관, 국회농림해양수산위원회, 변용전국회의원

서산 A.B지구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 건의안

존경하는 농림부장관님!

국가 기틀의 근간인 농어업발전과 농어업경쟁력 향상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계신 장관님의 노고에 대하여 충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서산시는 15만여 시민중 도시근로자를 제외한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업과 어업을 주업으로 삼아 생계를 유지해오고 있는 전형적인 도농복합형도시입니다.

또한 저희 서산시는 도심에서 조금만 벗어나면 삼면이 바다에 접해있으며, 모든 어민들이 이곳을 삶의 주무대로 삼아 어장을 가꾸고 가게를 꾸리며, 자녀양육과 교육까지 모두 바다가 주는 풍요롭고 끊이지 않는 혜택으로 이루워 왔습니다.

또한 이들은 대부분 배고픈 설움을 누구보다 많이 느껴본 가난한 어민들이며 전후세대들로 국가 최우선 시책인 농어업진흥 및 지원시책이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풍요롭게 가꿔주고 지켜주리라는 것을 굳게 믿고 가난속에서도 열심히 고향을 지키며 살아온 그야말로 우리 국가기틀의 근간인 농어업을 지키며 살아온 기수들입니다.

그러나 1979년 현대건설에서 농경지 조성 및 축산단지를 조성한다는 목적으로 A.B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를 시행하면서 이곳을 삶의 터전으로 삼아온 모든 어민들이 하루 아침에 황금어장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더욱 가슴아프게 하는 것은 황금어장을 잃은 뼈아픈 만큼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내세우는 무허가.무신고어업에 대한 보상이 이들이 가꾸온 삶의 터전을 내어준 손실과 고통에 비하면 너무도 터무니 없을 뿐만 아니라 당초 보상지침과 보상공고 내용과는 달리 A.B.C급으로 보상대상과 보상지급액을 정한 것은 도의적으로나 현실적으로도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피해 농어민에게 매립지의 일부를 매수 희망신청을 받아 분배하기로 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것 또한 국내 최고의 대기업으로서 취해야 할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산시의회에서는 현대라는 국내 최고의 대기업이 피해어민들의 고통을 한층더 이해하고 이들에 대한 도리를 다하여 줄 것을 바라며 다음과 같이 건의드립니다.

다

음

1. 서산 A.B지구 무허가.무신고 어업보상이 하루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림부에서는 1979년 8월 24일 현대의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 면허허가 이후 '87년 1차 연장허가에 이어 '91년 6월 20일 2차 연장허가 신청시 무허가, 무신고어업에 대하여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에 관한 특별법규정을 준용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는 조건으로 공사기간 연장허가를 하여 주었으며,

동년 10월 충청남도에서는 이를 근거로 현대와 협의하여 보상지침을 수립시달하였고, '92년 2월 17일 현대에서는 공특법에 의하여 보상하겠다는 보상계획을 한국일보와 대전일보에 공고하였으며, 이에 따라 서산시 인지면, 부석면, 해미면, 고북면, 석남동, 오산동등 4개면 2개동 81개 부락에서 6,181세대가 보상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보상지침이나 공고내용과는 달리 부락을 단위로하여 A.B.C급으로 보상대상 및 보상금액을 분류 차등지급키로 함에따라 C급으로 분류된 17개부락 1,092세대가 이에 반발, 수차례에 걸친 항의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지금까지 미해결 상태에 놓여있으며, 어민들은 수년간에 걸쳐 서울과 지방을 오가며 보상문제 해결을 위해 시간적, 경제적으로나 정신적으로도 심한 고통과 피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뿐만아니라 현대에서는 보상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C급 어민들에 대해 임의적용한 보상금 15만원씩에 대해 공탁금으로 내걸고 채무부존재 확인소송을 통해 이의 결과에 따라 보상을 하려 하고 있습니다.

농민에게는 땅이, 어민에게는 바다가 고향이며, 삶의 터전이요, 생계의 수단입니다.

고향을 잃고, 삶의 터전을 잃고, 생계수단마저 빼앗겨버린 어민들에게 현대에서는 채무부존재확인소송에 의존하여 보상하려만 하지 말고 최대한 주민의 입장에서 조속한 기일내 공특법에 준용하여 보상을 완료해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다음 서산 A.B지구 매립지를 매수희망 농어민에게 매각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91년 6월 20일 현대건설의 2차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공사기간 연장허가시 매립지의 사후관리 조건 15항에 매립지의 일부를 인근 피해 농어민에게 우선 매각하여야 한다는 조건에 따라 매수희망신청 접수를 받은결과 총4,595명의 농어민이 2,295ha의 농지매수 희망신청을 한바 있습니다.

그러나 현대에서는 본 조항은 위헌이며 농지매수 희망 농어가 선정도 어촌계에 등록되었거나 매립사업과 관련 직접피해를 입지 않은 대상자도 절반이나 된다면 농지매각을 기피하고 있으나, 연장허가시 조건을 받아들이고 위헌이라고 말하는 것은 대기업의 이중성을 보여주는 처사이며, 간척사업이후 황금이장을 잠식당한 인근 농어민들의 생존권보존차원에서 뿐만아니라 대기업도 내가 사업을 했다고 모두 내것이라는 생각을 버리고 사업주와 피해 농어민이 공존공영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성실한 자세로 분배에 나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기업은 기업가가 운영해야하고 농사는 농민이 지어야 한다는 것은 누가 생각해도 당연한 일인만큼 국토의 대부분을 소유하고 있는 일부 기업과 계층의 재산의 재분배와 농지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도 매수를 희망하는 피해농어민들에게 분배될 수 있도록 적극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농림부 장관님!

이상과 같이 서산 A.B지구 공유수면매립으로 인한 피해 농어민
모두의 간절한 뜻을 모아 두가지 고충을 건의드립니다.

아무쪼록 농어민들이 정부를 더욱 신뢰하고 고향에서 흙을 일구며
희망을 가지고 살수 있도록 하루빨리 고충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8. 4. //

서 산 시 의 회 의 장 김 관 기